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3. 1.(화) 12:00 (지 면) 2022. 3. 2.(수) 초간	배포 일시 2022. 2. 28.(월) 15:30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돈 (044-203-6526) 담당자 사무관 지용준 (044-203-6521)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주요 내용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 원 추가 지원(6월 이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 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인상액 변화(2021년 대비)>

학교급	지원금액		인상액(2021년 대비)	인상률(2021년 대비)
	2021년	2022년		
초	286,000원	331,000원	+45,000원	15.7% ↑
중	376,000원	466,000원	+90,000원	23.9% ↑
고	448,000원	554,000원	+106,000원	23.6% ↑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 복지포(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시 제출서류>

복지포·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월)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평균 21.1% 인상하였다.
 -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지속해서 인상해 왔다.
 -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률: (2020) 16% → (2021) 24% → (2022) 21.1%
-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는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었으며, 당사자는 특별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학교장 추천 비율: 시도 전체 교육비 지원 대상자 대비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의 비율

- 아울러,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 지원내용: 학습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 원(서점 및 EBS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 신청기간: 6월 말~9월(예정)
- 신청방법: 별도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edupoint.kosaf.go.kr)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월 이후)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할 수 있다.
-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말하면서,
 -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 (Q&A)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주 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 원 (중) 연 46만 6천 원 (고) 연 55만 4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붙임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서울	60%	60%	70%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부산	60%	-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구	60%	-	8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인천	60%	60%	70%	교육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난민
광주	-	-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	60%	-	80%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울산	60%	135%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	-	8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70%	의료, 난민	교육 한부모 난민
강원	80%	-	80%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충북	-	52%	8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8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북	68%	-	8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남	60%	-	7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경북	68%	-	80%	생계급여 수급자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남	-	-	8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7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는 의료급여,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학교장’은 학교장 추천자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집중신청기간

**2022.3.2.(수)
~ 3.18.(금)**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 예정으로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
※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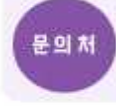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사이트에서의 소득인정액 모의결과는 참고치일 뿐,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단,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생계·의료 급여 등 타 급여보다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8.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전년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22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도 전년도 지원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시도교육청별 대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교육비 원클릭 신청 누리집(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9.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10.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올해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입학금·수업료' 등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집중신청기간을 통한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을 권장합니다.

Q11. 교육급여 지원 학생 대상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은 무엇인가요?

- '22학년도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연 1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강의 이용권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올해 6월 이후 추진될 예정으로, 지원 대상자·금액·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